

# 上海專利 事務所

## 目 次

- I. 上海專利事務所
- II.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(CCPIT)特許代理機構
- III. 中國專利代理有限公司
- IV. 永新專利代理有限公司

〈고딕은 이번號, 명조는 다음號〉

1985년 4월 1일 中國專利(特許)法の 施行以後 工業所有權業界에서는 中國으로의 特許進出을 大위한 制度研究 및 準備을 꾸준히 進行시켜 왔으며, '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中國과의 경제분야 교류가 급속도로 신장됨에 따라 特許진출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. 특히 中國特許局이 대한민국 국적의 特許出願을 受理키로 한 금년부터는 特許出願이 활발해지리라 예상된다.

이에 中國에 대한 外國人の 特許出願대리업무를 하도록 國務院에 의해 지정된 4個 機關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. 우선 이번호에는 지난 7日 본회를 방문한 上海專利事務所의 須一平(Xu Yi-Ping)所長과 吳容珍(Wu Rong-Zhen)(국재부)氏로부터 상해전리사무소의 역할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. 나머지 3個 機關들에 대하여는 다음號에 연재키로 한다.

▲中國에 있어서 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法的 장치는?

◎基本的으로 發明, 實用新型(이하 實用新案이라함) 및 外觀設計(이하 “意匠”이라함) 등 3종류의 창작을 各各 發明特許·實用新案特許 및 意匠特許로 保護하는 中國專利法(이하 “中國特許法”이라함) (1985. 4. 1. 1發効)과 商標를 保護하는 中國商標法(1983. 3. 1 發効) 등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.

▲中國의 工業所有權 擔當 機關은?

◎韓國은 特許·實用新案·意匠

및 商標의 출원수리·심사 및 등록등 公業소유권관련 제반 업무를 特許廳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데 반해서 中國에서는 特許(發明特許·實用新案特許·意匠特許)는 國務院 직속으로 國家技術委員會에서 관리하는 專利局(特許局)에서 담당하며, 商標는 國務院 직속인 國家工商行政管理局 산하 商標局에서 담당하는 등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.

▲外國人으로서 中國에 特許 또는 商標出願을 하려면?

◎特許法 第19條 및 商標法 第1

0條에 따라 國務院에 의해 指定된 代理機關에 委任하여야 한다.

현재 中國에서 外國人關係特許事務를 취급할 수 있도록 지정된 機構로는 特許法實施細則 第14조에 明示된 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(CCPIT), 上海專利事務所 및 中國專利代理有限公司(홍콩소재) 등 3개와 87년에 추가로 지정된 永新專利代理有限公司(홍콩소재) 등 4個 機構가 있으며, 外國人關聯 商標事務를 취급할 수 있는 기구란 商標法實施細則 第29條에 明示된 CCPIT와 中國專利代理有限公司(홍콩) 및 영신전리대리유한공사 등이 있다.

▲上海專利事務所의 설립 및 성격은?

◎우리事務所는 政府機關이 아닌 독립민간기구로 오랜 준비 끝에 1984年 9月 15日에 設立되었으며, 外國人關聯 特許事務를 취급할 수 있도록 國務院에 의해 지정된 4個의 機構中 하나이다.

▲上海專利事務所의 주요업무는?

◎우리 사무소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다.

- 中國特許出願에 관한 助言
- 特許檢索 修行
- 出願書 準備, 翻譯 또는 修正
- 顧客을 代理하여 出願, 實體審查請求 등 出願節次 수행 및 特許局의 決定에 對하여 顧客에게 의견 제시
- 特許의 正當한 權利를 유지하고 特許權者의 위임을 받아 特定한 特許의 中國에서의 可能한 侵害에 대한 감시
- 異議申請 節次 및 無効訴訟에 있어서 顧客을 代理
- 中國에서의 特許의 實施 및 技術移轉에 관한 助言 및 相談
- 라이선싱, 技術移轉 및 契約準備 등에 있어서 顧客을 지원
- 特許紛爭의 조정
- 特許를 取得하는 方法, 無効 또는 侵害訴訟 및 中裁를 處理하는 方法등에 관한 助言 및 相談

▲貴事務所의 구성은?

◎위와같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우리事務所는 9個 部署와 하나의 室로 구성되어 있으며, 各 技術分野 및 法律

分野의 專門家 115名 (그중 변호사가 60名, 변호사가 11名이다) 이 고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.

各 部署의 역할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

- 가. 電子電器代理部(14名)
- 나. 化學化工代理部(14名)
- 特許(發明, 實用新案, 意匠)의 出願代理業務
- 다. 機械代理部(14名)
- 라. 特許技術實施部(10名); 라이선싱등 기술이전업무
- 마. 法律部(7名); 侵害訴訟의 代理 및 裁判所의 수속업무
- 바. 文獻서비스部(8名);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특허문헌의 검색서비스를 수행
- 사. 國際事務部(4名); 世界各國과 연락하여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各國의 고객들과의 접촉업무
- 아. 綜合事務部(20名); 出願書類의 접수, 작성 및 特許廳에의 제출 등 사무소내의 전반적인 흐름을 조정
- 자. 行政管理部(7名); 사무소의 예산, 회계 등의 행정관리업무
- 차. 所長室(7名); 所長, 副所長, 所長補佐役등으로 구성되며, 사무소內의 主要한 人事, 운영방침 등을 결정하는 最高機構

▲출원의뢰서 구비서류는?

◎發明 또는 實用新案特許出願의 경우에는 發明의 名稱, 出願人姓名, 住所 및 國籍, 우선권주장여부, 明細書, 청구의 범위, 圖面 (필요한 경우), 先行技術자료,

出願의뢰서와 가장 중요한 委任狀 등 필요한 모든 관련서류 및 정보를 구비하여야 한다. 의장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서지적 사항, 위임장, 의뢰서, 도면 또는 사진, 의장을 표현할 物品 및 그 物品이 속하는 區分등을 구비하여야 한다.

지난 몇년간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委任狀樣式外에 出願人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미국의 경우와 유사하다. 따라서 만일 出願人이 이미 美國에 특허출원을 했다면 美國 出願書類 寫本을 委任狀 및 의뢰서와 함께 우리에게 보내면 된다.

▲出願依頼時 言語 및 번역은?

◎英語 또는 日語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. 事件을 담당한 辨理士가 직접 번역 및 수정을 하며 출원서의 明細書에 잘못이 있는 경우 출원인에게 그것을 정정하는 방법에 관한 의견제시와 함께 즉시 통지할 것이며 그에 따른 出願人의 指示를 받자마자 수정된다.

또한 양질의 번역을 제공하기 위해 所長 및 副所長에 의해 최종적으로 검토된다.

▲處理期間은?

◎우리의 경험으로 미루어볼때 대략 30Page의 영문으로된 출원서류의 경우 출원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특허국에 출원하기까지 7~10日이 소요된다. 지급으로 요청하면 3日內에도 처리가 가능하며 가장 빠른 경우 하루만에 출원된 것도 있었다. 또한 中國

特許局은 상해에 支局을 두고 있기 때문에 上海支局에 出願은 접수하자마자 곧 出願日과 仮出願番號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

이는 Fax 또는 Telex를 통하여 출원인에게 통지된다.

▲通信手段은?

◎통상 출원서류는 항공우편

(DHL등)으로 보내면 되며 급한 경우에는 Fax를 이용할 수 있다.

中國의 特許出願 節次에 있어서의 期限

| 단 계  | 期 限  |
|--|--|
| 1.우선권주장출원-發明特許·實用新案特許-意匠特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最初の 우선일로부터 12個月以內<br>最初の 우선일로부터 6個月以內                  |
| 2.우선권주장과 관련한 증빙서류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出願日로부터 3個月 以內  |
| 3.최초의 명세서 범위내의 發明特許出願에 대한 자진보정                         | 出願日로부터 15個月 以內   |
| 4.조기공개 신청  | 出願時  |
| 5.조기공개   | 出願日로부터 18個月 以內   |
| 6.實體審査請求   | 出願日로부터 3年 以內   |
| 7.處分에 대한 意見書 提出  | 통상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~3個月 以內로 특허국에 의해 지정된 기간內               |
| 8.이의신청   | 특허출원공고일로부터 3個月 以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.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의신청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個月 以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.拒節査定에 대한 再審査請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거절사정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個月 以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.特許再審査部の 결정에 불복할 경우 人民法院에 의 소송제기                     | 결정서의 수령일로부터 3個月 以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.存續期間:發明特許<br>實用新案特許<br>意匠特許                         | 出願日로부터 15年<br>出願日로부터 5年(3年 更新可能)<br>出願日로부터 5年(3年 更新可能) |
| 13.實用新案特許 및 意匠特許의 更新申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존속기간 만료전 6個月 以內  |
| 14.特許權侵害에 관한 소송제기 시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특허권자 또는 이해 관계인이 침해행위를 알게된 날로부터 2年                      |
| 15.강제실시권의 허여   | 특허권허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6.특허권자가 강제실시권 허여결정 또는 실시료에 관한 증재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의 소송제기 | 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3個月 以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7.어느 一方의 침해에 관한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의 소송제기               | 통지서의 수령일 로부터 3個月 以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8.라이선스 계약의 특허국에 의 통지 및 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조인된 라이선스계약의 발효일로부터 3個月 以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9.特許證料 納付   |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個月 以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特許手数料 및 辨理士 報酬標準額表

| 項 目  | 發 明   |            | 實 用 新 案 |            | 意 匠   |            |
|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
|  | 手数料   | 弁理士<br>報酬額 | 手数料     | 弁理士<br>報酬額 | 手数料   | 弁理士<br>報酬額 |
|  | 유안(元) | US\$       | 유안(元)   | US\$       | 유안(元) | US\$       |
| 1. 出願  | 150   | 300        | 100     | 250        | 80    | 175        |
| (1) 청구항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, 초과하는 각 청구항마다            | 20    |            | 20      |            | 20    |            |
| (2)30Page를 초과하는 경우, 초과하는 각 Page 당              | 15    |            | 15      |            | 15    |            |
| (3)300Page를 초과하는 경우, 초과하는 각 Page 당             | 30    |            | 30      |            | 30    |            |
| 2. 실제심사청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0   | 50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
| 3. 조공개 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50         |         | 50         |       | 50         |
| 4. 出願取下  |       | 50         |         | 50         |       | 50         |
| 5. 명세서의 보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*          |         | *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
| 6. 再審査 請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0   | 125        | 100     | 125        | 80    | 100        |
| 7. 異議申請參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*          |         | *          |       | *          |
| 8. 異權申請  | 30    | 200        | 20      | 200        | 20    | 150        |
| 9. 이의신청절차에 있어서 진술이 필요한 경우의 추가료<br>(구두)<br>(서면) |       | *          |         | *          |       | *          |
|  |       | (300)      |         | (300)      |       | (200)      |
| 10. 無効請求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0   | 350        | 200     | 300        | 150   | 225        |
| 11. 성명, 주소, 법인명, 출원인의 서명 또는 인장등의 변경등<br>재      | 10    | 30         | 10      | 30         | 10    | 30         |
| 12. 기간의 연장 또는 기일의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30         |         | 30         |       | 30         |
| 13. 양도의 등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100        |         | 100        |       | 100        |
| 14. 강제실시권의 실시료에 관한 중재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| 5          | 100     | 5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
| 15. 강제실시권 허여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0   | 50         | 200     | 30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
| 16. 갱신료  |       |            | 100     | 45         | 100   | 45         |
| 17. 출원유지료(每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| 10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
| 18. 년차료(每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
| (1)發明  |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
| 1~3年   | 200   | 20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
| 4~6年   | 300   | 25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
| 7~9年   | 600   | 30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
| 10~12年   | 1200  | 40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
| 13~15年   | 2400  | 60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
| (2)실용신안 및 의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
| 1~3年   |       |            | 100     | 15         | 50    | 15         |
| 4~5年   |       |            | 200     | 25         | 100   | 20         |
| 6~8年   |       |            | 300     | 40         | 200   | 30         |

特許手數料 및 辨理士수임료

| 項 目                     | 發 明   |            | 實 用 新 案 |            | 意 匠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手數料   | 변리사<br>報酬額 | 手數料     | 변리사<br>報酬額 | 手數料   | 변리사<br>報酬額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안(元) | US\$       | 유안(元)   | US\$       | 유안(元) | US\$       |
| 19. 년차료납부 기간의 연장(6個月以內) |       | 20         |         | 15         |       | 15         |
| 20. 기타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
| (1)하나의 우선권 주장           |       | 35         |         | 35         |       | 35         |
| (2)2이상의 우선권 주장(추가건당)    |       | 25         |         | 25         |       | 25         |
| (3)출원서류의 지연제출           |       | 35         |         | 35         |       | 35         |
| (4)처분서류의 수령 및 발송        |       | 35         |         | 35         |       | 35         |
| (5)우선권 증명료              | 20    | 25         | 20      | 25         | 20    | 25         |
| (6)特許證料                 | 100   | 25         | 50      | 25         | 50    | 25         |
| (7)번역(原本의 100단어당)       |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
| 영어→중국어                  |       | 12         |         | 12         |       | 12         |
| 일어→중국어(일어 100字당)        |       | 8          |         | 8          |       | 8          |
| 불어,독어→중국어               |       | 14         |         | 14         |       | 14         |
| 중국어→영어 또는 일어(중국어 100字당) |       | 14         |         | 14         |       | 14         |
| 중국어→불어 또는 독어(중국어 100字당) |       | 20         |         | 20         |       | 20         |
| (8)타이핑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
| A <sub>4</sub> 용지 1枚當   |       | 5          |         | 5          |       | 5          |
| 16MO용지 1枚當              |       | 4          |         | 4          |       | 4          |
| (9)복사(1枚當)              |       | 0.45       |         | 0.45       |       | 0.45       |

註

1. 上記 手數料은 납부시의 환율에 따라 달러로 환산하여 청구된다.
2. “\*”표시는 소요된 시간에 따라 결정되는 변리사 報酬額을 의미한다.
3. 手數料은 中國特許局 公告 第4號 및 第 11號로 정해진 것이다.

▲연락처

Address:中國上海市 延安西路 601號 (601 Yan'an Xilu, Shanghai, P.R.C)

Tel.:86-21-313852, 587418

Telex:33486 SPACN

Fax:86-21-511577

<계속>

<金亨昊記>

案

工業所有權 相談委員會

內

◎ 相談日時: 每日 10:00~16:00  
(土요일은 10:00~12:00)

◎ 相談料: 無料

◎ 相談依頼者: 本會 會員企業(非會員일 경우 特請에 限함)

◎ 相談分野 및 範圍

- 1) 出願·異議申請·登錄節次 및 要領
- 2) 工業所有權紛爭의 豫防 및 事後處理
- 3) 社內 特許管理要領·職務發明補償制度 運用方案

4) 工業所有權 實施斡旋 및 活用

5) 企業內 工業所有權專擔機構設置方案

6) 其他 工業所有權에 관한 諸般事項

◎ 結果處理

1) 相談依頼會員社에 直接 回答

2) 相談에 關聯되는 秘密事項은 保障되며 公開 가능한 事項은 本會 會誌 또는 文庫輯으로 刊行 配布

◎ 相談處: 本會 發明振興部 및 調查資料部  
(557-1077~8, 568-8263·8267)